

新規性과 進歩性 判斷

特許出願 및 審査請求時의

<Ⅲ>

文 澄 華
<辨 理 士>

一承 前一

發明, 實用新案, 意匠이 그의 出願當時 特許要件 또는 登錄要件을 갖추었다고 認定받아 特許權이나 登錄權을 特許廳으로부터 獲得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특허요건 및 登錄要件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뒤늦게나마 發見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는 工業所有權法에서 规定한바에 의하여 그 특허권 또는 등록권이 無効가 되는 바 각法의 關係條項과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特許 無効事由

第69條 ① 특허가 다음 각號의 一에 該當하는 경우
에는 審判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1. 특허가 第2條 特許를 받을 수 있는者.

第3條 植物發明特許

第4條 特허받을 수 없는 發明

第5條 特허의 定義에 違反된 特허

第6條 特허요건에 不合當한 것이 특허된 때

第11條 先願主義에 違背된 것이 특허된 때

第40條 外國人의 能力

2. 冒認出願에 대하여 特허한 때

3. 出願明細書에 瑕疵가 있는 것이 특허된 때
以上의 諸般規定에 위배된 것이 특허 되었을 때에는
審判에 의하여 特허권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實用新案 및 意匠登錄 無効

實用新案法 第19條 意匠法 第35條에 规定되어 있는 바 이들 規制內容은 特許法과 類似하므로 樞條法規의 紹介를 省略한다.

本欄에서는 中樞가 되는 출원 및 審判請求에 있어서의 “新規性”과 “進歩性”에 대하여 記述하기로 한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무릇 발명이나 고안은 “產業上 利用性”이 있어야하고 兼하여 “신규성”이 있어야하며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認定되었을 때 비로소 “특허권”이나 “등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工業所有權法上 “산업상의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하여 解說키로 한다.

產業上의 利用性

발명이 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特허법의 目的이 產業發達을 圖謀함에 있으므로 보아 當然之事이다.

다만 「산업」과 「이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問題點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산업이란 어떤 業을 말합인가?

우리 特허법에서는 산업의 定義를 明示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산업이란 通常의 生產業이라고 알고 있다. 工業, 鑄業, 農業, 林業, 漁業, 水產業, 牧畜業 등이 包含되어 있음에는 異論이 없다. 다만 特許實務慣行上 運輸業, 交通業과 같은 補助產業의인 것도 산업에 包含되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그러나 保險業, 金融業, 醫療業等 이른바 サービス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認識, 運用되고 있다.

(나) 「이용」이란 산업상 이용되는 즉 產業上 實施되는 것을 意味한다.

治療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을 실시 즉 使用하는 것이 醫療上의 이용에 그치는 것은 醫療業이 산업이 아닌 이상 산업상의 利用性을 갖지 아니한 것이므로 特허의 對象이 될수 없다.

이에 反하여 治療機械의 발명과 같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醫療業上의 이용이 되기는 하나 이것을 生産하는 것이 산업(공업)상의 이용이 되는 것이므로 當然히 特許對象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關係는 教育方法과 教育器具, 競技方法과 競技器具에 있어서도 同一한 例라고 하겠다.

特許實務慣行上 治療法 등 人體의 處理方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것으로 處理하고 있다 함은 上述 한바 있거니와 더 나아가 인체 또는 그一部를 構成要件의 하나로 하는 발명은 오로지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解釋되고 있다.

이것을 특허한다면 방법의 結果物인 人間을 商去來의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不當하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되는 까닭이다.

예컨대 義足, 副木등의 製造方法의 발명은 인체에正確하게 合致할 수 있는 型을 製作하는 工程이 필요하바 이 공정은 必然的으로 인체를 構成要件으로 한다.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既往에 型이 작성된 것을 基礎로하여 그것의 模型을 작성하여 그 모형을 사용해서 의족, 부목등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은 인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족, 부목등의 製造裝置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 產業上 利用性에 관한 問題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함은 그 발명이 곧 산업상 이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將來에 이용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으면 足한 것이다. 무릇 발명, 특히 基本의 發明은 그것을 企業化하는데 相當한期間을 필요로하는 現實과 特許制度의 目的이 발명을 기업화할 수 있도록 하여 國家產業振興에 寄與케 함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解釋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 발명실시 즉 “이용의 가능성”이 인정되는以上 그 발명이 出願當時 產業上 利用되지 못할 것임이 分明한 것이였다고 하드라도 特許與否에는 無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래에 도달되더라도 學術的, 實驗的인 것에 限하여 그것이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產業發展에 有用”할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함은 반드시 現실적으로 經濟的利益을 隨伴한 것이라야만 된다고는 할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을 갖고 아니 갖고는 經濟的, 社會的, 諸般與件에 따라 變動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발명의 質과는 必須적인 相關關係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 基因한다.

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技術思想이란 學者가 理論의으로 그 가능성을 論證하면 되는 科學的思想과는 달리 產業界에 있어서 安全確實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理論의으로 그 가능성이 解明된 과

학적 사상을 산업상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술적사상이며 이 기술적 사상의 創作이 특허권의 대상으로서 保護받게 되는 것이다.

發明의 新規性

우리나라 現行法은 “신규성”을 다음 3 가지로 區分規定하고 있다(第6條 第1項)

-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된 것
- 特허출원전에 國내에서 公然히 實시된 것
- 特허출원전에 國內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것(施行令 2條) 일때는 신규성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新規性의 時期의 基準

발명이 신규한 것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特허출원의 「때」를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 즉 발명의 時期도 아니며 발명의 公表의 시기도 아닌 발명을 特허청에 提出하는 시기 즉 “때”가 신규여부의 限界點이 되는 것이다.

(나) 新規性判斷의 地域의 基準

어느 地域內에서 발명의 출원전에 발명이 公표된 경우에 “신규성”이 衰失된 것으로 看做處理되고 있다.

우리나라 現行法은 狀況에 따라 一國主義와 世界主義를 分離 採擇하고 있다. 즉 公知(第6條 第1項 第1號)와 公用(第6條 第1項 第2號)에 대하여는 國내에 있어서의 事實與否에 의해 판단하고, 公知文獻記載(同條 同項3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準國際的 事實에 의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공지”, “공용”, “공지문현기재”에 대하여 國내主義를 채택하여 오다가 1973년 12월 31일의 改正法律 第2658號(現行法)부터 일국주의와 準國際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바 主要原因是 通信交通이 容易迅速判된 現實下에서는 일국주의 또는 國제주의에 의한 差異가 生成되는 경우가 적어졌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나라의 貿易의 振興과 產業競爭의 極大化에 수반한 國際的競爭力의 強化가 要請되는 時代의 必要性에 따라 取하여진 法制라고 하겠다.

※ “공지”, “공용은 國내주의”를 채택하고, “공지문현기재”는 國제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美國, 西獨, 캐나다, 北歐諸國, 스위스 日本 등이며 全項을 國제주의로 채택하는 국가는 佛法系諸國, 奧地利, 蘇聯, 체코슬로바키아, 평가리, 日本 등이다.

(다) 公知發明

公知發明이란 公연히 不特定多數人이 공지할 수 있는 狀態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계 속>